

등록번호	기획예산과-2603
등록일자	2016.2.25.
결재일자	2016.2.2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협업관리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백은경	김형철	권순우	한수경	황지영	02/26 최창식
협조	주무관 의회법제팀장	서재원 이창하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상위규정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법 및 구 실정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 및 제8항, 제59조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5조제2항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행정자치부 지침)」

II 개정이유

- 상위규정에 저촉되는 항목 정비
- 상위법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내용 정비
- 시설관리공단 위탁 시설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용어·오타자 정비

III 개정내용

- ㉔ 임원의 수 :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행정자치부 지침)」은,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1/3(33.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5명 중 2명(40%)이 당연직 이사로 규정 위반
 - ※ 조례 개정 후, 공단 정관 개정으로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

개정전	개정후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F5 임원의 임기 : 보궐 취임 임원의 임기제한 규정 삭제

- 「지방공기업법」제59조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결원으로 보선되는 임원의 임기를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구 조례는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규정에 저촉됨

개정전	개정후
제8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단 당연직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선되는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로 한다.	제8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F6 이사의 정수 :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문구 삭제

-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5조제2항에는 제한하고 있지 않는 문구를 삭제하여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

개정전	개정후
제10조(이사)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단,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10조(이사)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단,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u>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u> 으로 한다.

4 법 개정사항 반영 등

- 2015. 12. 15.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2014. 11월 정부조직 개편 반영

개정전	개정후
제22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구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 제4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이하생략)	제22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8항 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구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 제4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이하생략)

5 공단의 사업 : 세부 시설명 삭제

- 현행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단의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 위탁관리 시설명을 포함(제24조제2호) 하고 있으나 추가된 위탁관리 시설명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로도 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은 증감할 가능성이 있음
- 공단의 정관에 위탁관리하는 시설명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는 세부 시설명은 제외하고 포괄적인 내용만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개정전	개정후
제24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문화체육센터(무학봉체육관,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회현동체육센터,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거주자우선 주차제 관리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24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 에 관한 사업 2. 문화체육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거주자우선 주차제 관리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F9) 용어 및 이탈자 정비

- 제21조는 임원추천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사장 임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전체 임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관련 내용에 맞도록 수정

개정전	개정후
제21조(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⑤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 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21조(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⑤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자가 임원 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 조례의 사업 규정은 제24조이며, 제23조는 수당 규정임

개정전	개정후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3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4조 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IV 추진일정

- 조례개정 방침 수립 : 2016. 2월
- 성별영향 분석 및 부패영향 평가, 규제심사 : 2016. 3월
- 입법예고 : 2016. 3월 ~ 4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구의회 제출 : 2016. 4월
- 구의회 조례안 심사 및 공포 : 2016. 4월 이후

V 참고사항

- 예 산 조 치 : 비예산
- 합 의 : 합의 불필요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

붙임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